

##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1년 5월 3일

나.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 **3. 의안 회부일자**

2011년 5월 6일

## **4. 근거법령**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 동 조례안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다양하고 복잡한 주민 욕구충족 과 행정수요반영을 위한 지방자치의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예산편성과정에 구민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반영하여 구재정의 건전화 및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제출된 것임

## [주요내용]

(1) 안 제1조에서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안 제2조에서 “주민”이라함은 1.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 3.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3) 안 제3조에서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나 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준수하도록 함

(4) 안 제6조에서 구청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방법 등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도록 규정

(5) 안 제7조제1항에서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제2항에서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그리고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함

(6) 안 제10조제1항과제2항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민 참여예산위원회를 두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같은 조제3항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되 기획재정국장과 주민생활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제4항에서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며 1.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동장이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재정, 예산 등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하되 단,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은 동별 2명 이하로 하고 같은 조제5항과 제6항에서 위원회에서는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며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예산부서의 장이 간사를 하도록 규정

(7) 안 제11조에서 위원회의 기능, 안 제12조에서 운영원칙, 안 제13조에서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도록 함

(8) 안 제14조에서 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안 제15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소집 및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고 안 제17조에서 5개항의 해촉사유를 명시

(9) 안 제19조에서 위원회는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조사, 연구를 의뢰하거나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10) 안 제20조에서 구청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의 편성과정 등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1조에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회의 비용, 참석수당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예산의 범위, 의견수렴절차, 운영방법 등을 정할 수 있도록 (2005. 8. 4 법률 제7663호)로 「지방재정법」 및 (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26호)로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규정을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39조가 (2011. 3. 8)재개정됨으로서 행정안전부 3개의 표준안 중 제2안을 기본으로 하되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여론의 일부를 수렴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지방자치에서 공무원 중심의 예산편성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과 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하여 납세자인 지역주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고 주민의 이익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행정과 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진정한 지방자치의 핵심인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와

예고 절차를 거치는 등 절차상으로도 저촉됨이 없어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만 전국 100여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몇 곳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올바르게 조례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에 참여할 조직체계와 운영방안이 우리 실정에 적합하도록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있어서는 첫째 위촉위원의 구성을 보다 폭 넓은 분야로 다양하게 확대하고, 둘째 위촉할 위원들을 심사할 심사위원의 구성 과 자격, 심사기준 과 방법 등 세부적인 심사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셋째 위촉된 위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의식의 고취 및 예산편성 능력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확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시행규칙의 제정은 물론 이에 수반되는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됨.